중계기 설치에 관한 합의서

06725

<u>원의 아이되어</u> (이하'임대인'이라 칭함)과 (주) 엘지유플러스 (이하'임차인'이라 칭함)은 아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와 관련하여 신의와 성실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설치 장소 주소	파전시 진임먼 철로(331 -		
합 의 기 간	20/6년 <u>2</u> 월 9일부터 20/7년 <u>1</u> 월 3일까지	(/ 〉 개월)	
(🔎 개월)전력료	금 팔살딸만 원정(₩ 880,000, VAT 별도)	매(년/월),(선/후)지급 최초지급일: 월 일	
입금용 계좌	은행: 신찬근행 계좌번호: / 40-011-30754	(2) 예금주: (구) 원회아이되	ols

제1조(기간갱신)

합의 당사자 쌍방은 '을'이 기간통신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계약내용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 기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전력료 지급 및 산정 방법)

- 가. '갑'은 전력료 외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을'에게 제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나. 합의 기간 중 중도 해지한 경우의 전력료 정산은 일할 계산에 의한다.
- 다. 중계기의 추가 설치에 따라 전력 사용이 증가되는 경우 전력료는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출입보장)

중계기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은 언제든지 위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제4조(정보 변경에 대한 조치)

설치 장소에 대한 소유권·관리권·운영권의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업등기사항, 입금용 계좌의 변경 등본 합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할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5조(합의의 중도 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합의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을'의 장비 설치 목적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 경우
- 나. '을'의 전파환경 및 영업정책의 변화 등으로 중계기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제6조(설치공사 관련사항)

- 가. '을'은 필요한 경우 신형 장비 교체 및 증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나. '갑'은 '을'의 중계기 설치 목적의 시설공사 또는 위 가 항의 공사에 선의로써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 가. 본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 및 상 관례를 따른다.
- 나. 본 합의에 대한 소송은 중계기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합의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끝.

20 / 기 년 / 월 26일

임대인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연락처	031-8047
	성명	(소) 원익아이되에스	주민/법인 등록번호	131311-0163174	담당자	권재현
		四班外分号直	사 업 자 등록번호	695-81-00394		
임 차 인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 3가)	법 인 등록번호	110111-1296676	연락처	010-) (cgg -8t-39
	성명	(주)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이 상 철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220-81-39938	담당자	4201

(인 빌딩 중계기)